#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4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 박정현 · 이재관 · 이해식

정준호 • 이광희 • 장종태

박지원 • 이기헌 • 이재정

민병덕・김 윤・신정훈

김한규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,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·면·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.

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 나 열악하여 일각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·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 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19 호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48호)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법률 제 호

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2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	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					특례유형		존속기한	
2	19	「자율방범대	설치	및	운영에	관한	법	사용료등의	감면	2029.	12. 31.
		률」 제14조의2	2								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